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7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이준석·천하람·이주영

김용태 · 장경태 · 윤상현

유용원 · 모경종 · 김 건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,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 청을 두어 시·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 음. 이에 2개 이상의 시·군·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 정임.

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,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, 명칭 및 위치는 시·도의

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1항 중 "1개 또는 2개 이상"을 "1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시·도의 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	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
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	<u> 등</u>) ①
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	
<u>1개 또는 2개 이상</u> 의 시·군	<u>1개</u>
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	
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	
육지원청을 둔다.	
②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	②
명칭은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한다.	<u>시·도의 조례로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